

준 비 서 면

사 건 2015구합24094 사장 임면행위 위법 무효확인 청구
원 고 강한규
피 고 부산광역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함께 호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피고들이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2015. 12. 26.자 준비서면 및 2016. 1. 23.자 준비서면 상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룰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원고는,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자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13사건¹⁾의 당사자였으며, 청원법상의 청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피고를 형사고발한 고발인의 각 지위에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반박

그러나 원고가 든 사실관계들은 모두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인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불과하거나 각 사실관계에서 개별적인 구제수단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든 각 사실관계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원고도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과 법률적·행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2015.

1) 이는 원고가, 배태수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으로 임명한 피고의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12. 26.자 준비서면 21쪽),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단순히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배태수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13사건의 당사자이고, 2014. 7. 1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청원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청원인이며, 2014. 9. 경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이고, 2015. 9. 1. 법무부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이자, 2015. 9. 24. 부산지방경찰청에 피고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이상 2015. 1. 23.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개별적인 법률관계는 항소²⁾ 내지 청원법, 지방자치법 및 형사소송법 각 소정의 개별적 불복방법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도저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2)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13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 받았으므로 이로 인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배태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배태수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으로 임명한 피고 처분의 유/무효를 다룰 여지는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2014. 7. 29.)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합니다.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배태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로 인해 아무런 법률상·신분상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은 배태수의 의원면직 승인요청에 의해 피고가 의원면직을 승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의원면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은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조례나 규칙의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고, 배태수는 임명권자인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반박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이 배태수의 면직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피고 등이 이 사건 답변서 12쪽 및 13쪽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승인에 관해 단지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을 제2호증의 1 사직서의 내용 자체를 살펴봐도 배태수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³⁾된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마땅합니다(더 나아가 이러한 면직승인 처분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바 이 점에 있어도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임원복무규정 제15조의2 제1항은 「임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태수는 2014. 6. 30. 사직서를 작성⁴⁾(을 제2호증의 1 사직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2014. 7. 14. 피고에게 의원면직 승인을 요청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2 의원면직 승인 요청), 피고가 같은 날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바(을 제2호증의 3 의원면직 승인 통보), 이 사건 제1처분은 위 임원복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판결은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라고 판시하여 일괄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사직서가 배태수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직서는 배태수가 2014. 6. 경 피고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습니다.

4.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가. 원고 주장의 정리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⁵⁾을 정리하자면, 크게 (a)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임원추천규정의 효력에 관한 주장, (b)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및 (c) 위 임원추천위원회가 박종흠을 사장후보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추천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임원추천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1) 정관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관은 피고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무효인 정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5쪽).

5) 원고의 주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주장을 분류하겠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당시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2009. 7. 8. 조례 제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시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의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부칙 제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운영규정(이하 '설립위원회규정'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설립위원회는, ① 2005. 11. 24. 위 부칙 제2조 제3항 및 설립위원회규정 제4조 제2호 등에 따라 작성된 공사 정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을 제11호증 심의결의서), ② 2005. 11. 25. 당시 부산광역시장에게 공사 정관안에 대하여 인가 요청을 하였습니다(을 제12호증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요청).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③ 2005. 11. 28. 공사 정관안을 인가하였고(을 제13호증 부산교통공사 정관안 인가), ④ 2005. 12. 29. 부산교통공단이사장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내정자)에게 정관안 인가 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을 제14호증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또한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때마다 부산광역시장의 승인⁶⁾을 받았습니다(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각 참조).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근거한(정관 제10조 제2항⁷⁾)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원추천규정 역시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6) 관련 공문의 일부 문언상 '인가' 대신 '승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공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보조참가인 정관의 변경을 인가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합니다.

7)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추천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또한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10항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10조 제2항을 통해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의 규정인 ‘임원추천규정’이 규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제40조⁹⁾ 소정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피고의 인가를 득하는 대신에, 위 정관 제41조 제2호¹⁰⁾ 소정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피고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어, 그 효력에 있어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11쪽).

그러나 임원추천규정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10항 및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1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이고, 또한 수 차례

8)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9)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41조(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 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 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의 개정과정을 거쳐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의결 및 피고의 승인(2012. 8. 6.)이 있었으며(을 제15호증의 5, 한편 인가를 승인의 형식으로 받았다 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13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도 확인되므로(을 제1호증 2013구합20913 판결문 5쪽 하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관하여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배태수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지위에서 의원면직 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후임 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상법 제386조 제2항 및 제389조에 따라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한 것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대행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36쪽).

그러나 상법 제386조 제2항 규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보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제12조¹¹⁾에서 '직무대행체제'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더해 피고도 2014. 7.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후 후임사장임명절차 진행 등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2호증의 3 의원면직 승인 통보)을 보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따랐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한 것은 적법하고도 타당한 운영이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규정을 곡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 없습니다.

나) 또한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 및 임원추천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 신분엔 불과한 총무처장 소외 김영한에 의해 이뤄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을 제3호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는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40쪽).

그러나 임원추천규정 제3조 제1항은 ‘부산교통공사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는 사장의 결원이 발생 할

11) 피고보조참가인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 ② 사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가 직접 피고 및 부산광역시의회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결정·요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고, 오히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7항은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 요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및 부산광역시의회에 대하여 총무처장의 전결로 시행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뢰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및 임원추천규정의 내용을 곡해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원고는 사장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소외 김인환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위원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 및 임원추천규정 제3조 제4항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장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 또는 추천은 모두 무효라 주장합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44쪽).

우선 사장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임원추천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원추천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장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① 소외 김인환은 부산환경공단 이사, 부산교통공사 경영이사, 부산진구 및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재직 한 경력이 있어 경영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 ② 소외 이상철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으로 경영전문가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③ 소외 이성두는 영남화훼조합장, 강서로타리클럽 회장 및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여 경영전문가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 ④ 소의 이철상은 민주평통 해운대구협의회 고문, 새누리당 중앙위 자문위원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원을 역임하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⑤ 소의 김영수는 해운대구의회의 의장, 해운대구 새마을지회장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원을 역임하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¹²⁾하고 ⑥ 소의 배준구는 부산환경공단 비상임이사 및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경영전문가 또는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⑦ 소의 황영우는 부산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 및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역시 경영전문가 또는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¹³⁾입니다(을 제 16호증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추천에 관하여

- 12) 특히,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관련된 각종 공기업 및 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므로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13)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 판결은 “부산교통공사정관 제25조 제6호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심의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을나1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부산환경공단 ○○대학교수를 추천하고, 부산교통공단 ○○대학교수 2명을 추천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전 부산시광역시의원들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추천된 위원들은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산교통공사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대학교수 및 전 부산광역시의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 후보자 '김태성'에 관하여

원고는 사장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피고에게 추천한 후보자 '김태성'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후보 제1차 공개모집에서 부적격자로 심사된 전력이 있고, 그 경력자체로도 임원추천규정 별표1의 사장후보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임원추천위원회가 피고에게 후보자 '김태성'을 포함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김태성'의 경우 교보생명 미국법인 대표,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등을 역임하여 민간기업과 대규모 공기업(한국철도공사)의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임원추천규정 별표 1 소정의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위 '김태성'을, 2014. 8. 28. 실시한 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사장후보 추천에 대한 부적격자로 결정하였다가, 2014. 9. 29. 실시한 위원회(제2차 공개모집)에서는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고는 같은 사람인 '김태성'이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가 적격자로 결정된 것이 위법이라 주장하나, 여러 번 면접이 실시되는 경우 첫 번째 면접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면접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심사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면접 점수는 면접 장소에서의 태도 및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및 첫 번째 면접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김태성'은 두 번째 면접을 더욱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2) 후보자 '박종흠'에 관하여

원고는 후보자(현 피고보조참가인 사장) '박종흠'의 경우, 26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고 부산지방법원 2012. 8. 27. 선고 2012구합12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2015. 12. 26.자 준비서면 49쪽 내지 50쪽).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12. 8. 27. 선고 2012구합127 판결은 「구 운영규정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이 사건 후보 추천 당시 2급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면 굳이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

는 것으로서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참가인의 경력에 비추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구 운영규정상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원고 주장처럼 ‘전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당시 ‘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현 사장 박종흠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1급 국가공무원),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등 26년여 공직생활 대부분을 교통 및 물류 정책을 담당하여 교통분야 전문성 및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이 풍부한바(을 제8호증의 2, 3),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소정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마. 정리

앞서 보신 것처럼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을 비롯한 제 규정은 적법, 타당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것이고, 사장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하등의 위법도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현 사장 ‘박종흠’은 지방공

기업법,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것입니다.

5. 결론

이상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시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시어 본안의 판단에 나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11호증 | 심의결의서 |
| 2. 을 제12호증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요청 |
| 3. 을 제13호증 | 부산교통공사 정관안 인가 |
| 4. 을 제14호증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
| 5.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 각 부산교통공사 정관 승인 공문 |
| 6. 을 제16호증 |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참 고 자 료

1.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1부
2.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운영규정 1부

2016. 2.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 제

담당변호사 황 진 효

전 경 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귀중

심 의 결 의 서

안 건 명	부산교통공사 정관(안) 심의 · 결의
제 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 ○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의결주문	부산교통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인가(승인) 신청하기로 결의한다. - 붙 임 : 부산교통공사 정관(안)

2005년 11월 24일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구현	(서명)
위원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백운현	(서명)
위원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	배영길	(서명)
위원	부산광역시 교통국장	윤종대	(서명)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현욱	(서명)
위원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희로	(서명)
위원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사장	정해수	(서명)
위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헌영	(서명)
위원	조&조 변호사 사무실 대표	조우래	(서명)
위원	성도회계법인 상무이사	박근서	(서명)

을 제 11 호 증

을 제11호증

부 산 교 통 공 사 정 관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공사의 명칭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약칭 : BTC) 이라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며,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2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공고의 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부산시보,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을 제11호증

제7장 보 칙

제38조 (경영공시)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사의 규정)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제42조 (경영성과계약) 사장은 임명시 및 매년 1월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기업 정책준수의무, 연도별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제11호증

제2조 (공사의 설립행위)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본다.

12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수신자 부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요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산교통공사 정관(안)을 작성하여 인가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의서 1부. 끝.

12
12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시행 부산교통공사설립위
원회- / ()

접수 ()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전화 051)888-8282(행8282) 전송 888-3359

/ dsju@metro.busan.kr / 공개

접수	교통기획과 - 11540 (2005. 11. 25 :)
----	-------------------------------------

담당자	담당	과장	결
<i>주희</i>	<i>홍영</i>	<i>김기영</i>	<i>제</i>

을 제12호증



문서번호	예산담당관실
보존기간	준영구
보고일자	'05.11.

◎豫算 擔當官	財政官	企劃管理 室 長	行 政 副市長	市 長	決 裁
36부과장 이윤호		252부과장 김기태	기/3 부	하태하	결재 2005.11.28 시장
協助	交通局長 洪경래 交通企劃課長 김기태 擔當者 김기태	전무부시장 정문배			

★公企業擔當

이윤호

釜山交通公社定款(案)認可計劃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로부터 인가 신청된 정관(안)을
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코자 함.

○정 관(안) 구 성 :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

○설립위원회 정관(안) 심의·결의 : 2005. 11. 24.

※ 보수규정 등 제규정은 '05. 12. 20이전 제정 완료예정임

을 제 13 호 증



釜山廣域市
(豫算擔當官室)

을 제 13 호 증

釜山交通公社 定款(案) 認可計劃

시장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공단에서 2006. 1. 1부로 우리시로 이관되는 부산교통공사의 기본규정인 정관을 조기 제정하여 이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인가신청 정관(안)

□ 정관(안) 구성 :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

□ 정관(안)주요내용 : 2005. 11. 24.설립위원회 심의결의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공사의 목적과 명칭, 자본금(7조2천억) 등
- 제2장 사업(제6조~제8조) - 공사의 사업, 대행사업, 운임결정 등
- 제3장 임원 및 직원(제9조~제22조) -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임원 : 사장1인, 상임이사4인, 비상임이사 10인이내 및 감사1인을 둠.
 - 비상임이사 : 당연직(교통국장,재정관), 위촉직(관련전문가 등)으로함
 - 사장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
- 제4장 이사회(제23조~제27조) - 이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 제5장 재무회계(제28조~제35조) - 예·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제6장 사 채(제36조~제37조) - 사채발행 및 차관·차입에 관한사항
- 제7장 보 칙(제38조~제42조) - 경영계약제, 시장승인 사항 등 규정
- 부 칙(제1조~제3조) - 시행일, 설립행위,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인가신청자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을 제13호증

2. 정관(안) 검토결과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에서 심의·결의되어 인가 신청된 부산교통공사 정관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을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공단 정관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공사·공단 정관 및 현 부산교통공단 정관과 타 시·도 지하철 공사 정관을 비교 검토하여 제정된 것으로
- 전체 조문이 지방공기업법령이나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하자가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정관(안) 조치계획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신청한 정관(안)을 원안대로 인가코자함.
- 관련법규 - 공기업법 제49조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4. 공사설립 준비사항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확정 - '05. 11월중
- 직제규정 및 보수규정 등 제규정 제정 - '05. 12. 20이전
- 출자자산 확정 및 정부와의 부채인수 마무리 : '05. 12월중
- 사장 및 임원 임용, 직원 고용승계 조치 : '05. 12월중
-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및 협약서 체결 : '05. 12월중
- 법원 등기 완료 및 교통공사 출범 : '06. 1. 1.

- 붙임. 1.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심의결의서 1부.
2. 부산교통공사 인가신청 정관(안) 1부.

14



부산광역시

Dynamite
BUSAN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1.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승인·인가된 부산교통공사 정관 및 제규정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라오며

2.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3차 회의시 채택키로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노사간 임단협시 본 권고사항이 협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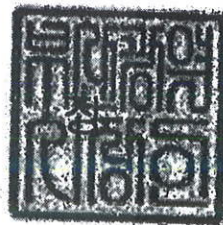
부산시 타 공사공단 직원의 정년과의 형평성을 감안, 부산교통공사에 직원의 정년을 조정토록 권고키로 한다.

불임 1 부산교통공사 정관 1부

2. 부산교통공사 제규정(별송). 끝.

을 제 14 호 증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내정자)

담당자 주동식 지방행정사무관 최영규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교통국장 전결 12/29 윤종대

협조자

시행 교통기획과-12859 (2005.12.29.) 접수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전화 051)888-8282(행8282) 전송 888-3359

/ dsj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4호증

15-1

21C 도시철도 운영 패러다임 선도

부산교통공사

수신자 부산광역시청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개정 정관(안) 인가 요청

이사회 의결을 거친 불임 부산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인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산교통공사 개정 정관(안) 1부.
2. 제9회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끝.

을제 15호증 1

부산교통공사



결재 기안자 이현빈 경영평가팀장 김두용 단장 전결 김태원

협조

시행 평가-002027(2006.12.26)

접수 ()

우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단1로6(범천1동861-1)

/ <http://www.subway.busan.kr/>

전화 640-7177

모사전송 051-640-7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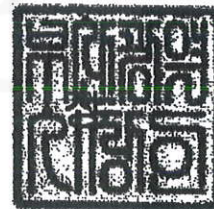
/ pitagoras10@subway.busan.kr / 공개

을 제15-1호증

Dynamic
BUSAN

성명	김장	생년월일	2007. 1. 12	나이	488	(14)
직업	기초임	주거형태	전세채	주택종류		

부 산 광 역 시



2016/02/23 18:34:21 10.1.5.93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부산교통공사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및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승인 요청

우리 공사의 일부개정정관안 및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교통공사정관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
및 승인 요청합니다.

- 붙임 : 1. 이사회 의결서 1부
2.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3.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5. 도시철도 보안관 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

을 제15-2호증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홍기영 법제과장 장영조 기획평가부장 황은대 기획조정실장 전결 03/25
박영태

협조

시행 기획조정실-1558 (2014.03.25.) 접수 ()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051)640-7131 /전송 051)640-7135 / kiyounghong@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2호증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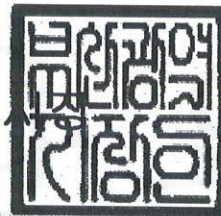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등 인가·승인 알림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1558(2014.3.25.)호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인가 및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승인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 및 승인 사항 》

1.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원안인가
2.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승인
3.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승인
4. 도시철도 보안관 관리규정 제정안 : 원안승인. 끝.

부산광역시



주무관 **여우일** 도시철도담당 **권명수** 교통정책과장 전결 03/28
홍기호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357 (2014.03.28.) 접수 기획조정실-1647 (2014.03.31.)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http://www.busan.go.kr>

전화 888-4394 /전송 051-888-4369 / yeo2010@korea.kr / 공개

을 제15-2호증

15-3

안전 · 편리 · 품격의 선진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철도시설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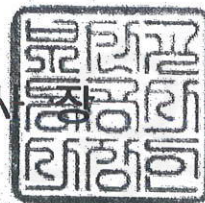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요청

우리 공사의 일부개정정관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 요청합니다.

- 붙임 1. 제1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
2.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끝.

을기 15호증 3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홍기영 법제과장 장영조 기획평가부장 황은대 기획조정실장 전결 01/20 박영태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418 (2015.01.20.) 접수 ()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051)640-7131 /전송 051)640-7135 / kiyounghong@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3호증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승인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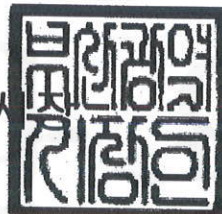
1.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418(2015.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의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승인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나. 승인사항 : 원안승인. 끝.

부산광역시



주무관 조귀면 도시철도팀장 정태교 철도시설과장 전결 01/23
미석근

협조자

시행 철도시설과-635 (2015.01.23.) 접수 기획조정실-516 (2015.01.23.)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철도시설과 / www.busan.go.kr

전화 051-888-4072 /전송 051-888-4089 / fuko1018@korea.kr / 공개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을 제15-3호증

15-4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관 개정안 인가 및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한 인가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승인을 불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 불 임 : 1. 제6회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2.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1부
3.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4. 현행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각 1부. 끝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인사담당

총무팀장

경영본부장

기획본부장

대결 08/02

협조

시행 총무팀-4360

(2012.08.02.) 접수

()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7209

/전송 051-640-7217

/ ljs4512@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4호증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부산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변경 안 등 승인 알림

1. 총무팀 - 4360(2012.8.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승인 요청한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변경 안 : 원안대로 승인

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안 : 원안대로 승인. 끝.

Humetro

부산광역시



주무관 김경미 교통정책과장 08/06
마창수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925 (2012.08.06.) 접수 총무팀-4397 (2012.08.06.)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교통정 / http://www.busan.go.kr

전화 888-8284 /전송 051-888-3359 / kikym@korea.kr / 공개

을 제15-4호증

15-5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부산교통공사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승인 요청

우리 공사의 일부개정정관안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노사 합의사항 반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인가 및 승인 요청합니다.

- 붙임 1. 이사회 서면 결의서 사본 1부.
2.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3.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5. 상용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6.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승인
15
회
인
5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이동규 법제과장 장영조 기획평가부장 황은대 기획조정실장 전결 08/12 박영태

협조

시행 기획조정실-3573 (2013.08.13.) 접수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7131 /전송 / leedk0221@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5호증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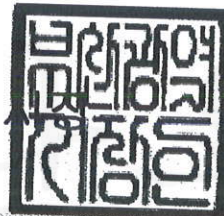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승인 알림

1. 기획조정실-3573(2013.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승인 요청한 부산교통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 부산교통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 원안대로 승인
-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 원안대로 승인
-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 원안대로 승인
- “ 상용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 : 원안대로 승인
- “ 정관 일부개정 정관 안 : 원안대로 승인. 끝.

부산광역시



주무관

김경미

도시철도담당

권명수

교통정책과장

전결 08/21

홍기호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0353

(2013.08.21.) 접수

기획조정실-3691

(2013.08.22.)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교통정

/ http://www.busan.go.kr

전화 888-4394

/전송 051-888-3359

/ kikyme@korea.kr

/ 공개

을 제15-5호증

15-6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



부 산 교 통 공 사

Humetro 행복한 도시입니다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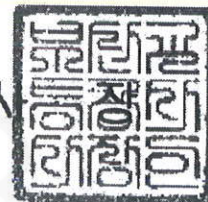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정관안 인가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 승인
요청

우리공사의 일부개정정관안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40조·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 및 승인을 요청합니다.

- 붙임 : 1.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 1부. 끝.

15
부
승
6

부 산 교 통 공 사



담당자

법무담당

기획PL

기획조정실장

기획본부장

전결 12/28

협조

시행 기획조정실-4417 (2009.12.28.) 접수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사1로6(범천1동861-1)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051-640-7127 /전송 051-640-7134 / jjuya0926@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6호증

강한경제 알찬도시 행복한 부산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개정 등 2건 승인 알림

1.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 - 4417(209.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승인 요청한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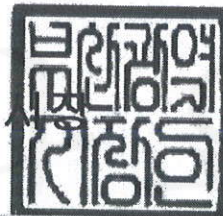
①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

②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 수정하여 승

인

- 붙임 : 1.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 1부,
2.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1부,
3.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수정내용 및 사유 1부.
끝.

부산광역시



주무관

김경미

도시철도담당사무 박창식

교통정책과장

01/06
미종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59 (2010.01.06.) 접수 기획조정실-41 (2010.01.06.)

우 611830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000 교통정책과 / <http://www.busan.go.kr>

전화 888-8282 /전송 051-888-3359 / kikyme@korea.kr / 공개

을 제15-6호증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교통공사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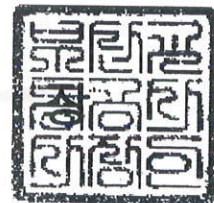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및 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요청

부산교통공사의 정관, 규정(직제, 보수, 복지후생, 연봉제) 일부개정규정안 및 상용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이사회(제5회, 2009.8.18)심의 의결을 거쳐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1부
 2.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4.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5. 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6. 상용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을 제 15-7호증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기획PL 기획조정실장 기획본부장 08/19

협조 담당자

시행 기획조정실-2855 (2009.08.19.) 접수

우 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사1로6(범천1동861-1) / http://www.subway.busan.kr /
전화 7130 /전송 051-640-7134 / s123s12s1@subway.busan.kr / 공개

을 제15-7호증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해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수신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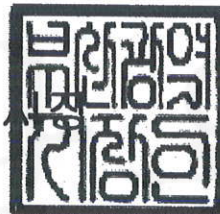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개정 규정안 등 6건 승인 알림

1.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 - 2855(2009. 8.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승인 요청한 부산교통공사 정관 개정 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 드립니다.

○ 승인사항

- ①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
- ②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대로 승인하되, 2009년 부산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5%이상 결원을 유지
- ③ 보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원안대로 승인
- ④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대로 승인
- ⑤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대로 승인
- ⑥ 상용직 관리규정 전부 개정 규정안 : 원안대로 승인. 끝.

부산광역시



담당자 김경미 도시철도담당 박창식 교통정책과장 09/03 이종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728 (2009.09.03.) 접수 기획조정실-3011 (2009.09.03.)

우 611830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000 교통정책과 / <http://www.busan.go.kr>

전화 888-8282 /전송 051-888-3359 / kikyme@korea.kr / 공개

을 제15-7호증



“2008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부산교통공사



수신자 부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승인 요청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을 정관 제4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붙임 : 1. 이사회 의결서 1부.

2. 부산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1부. 끝.

15-8

부산교통공사사



결재 기안자 박영주 기획PL 김득용 기획조정실장 김태원

기획본부장 전결 배광호

협조 직원 서승현

시행 기획-002189(2008.09.09) 접수 ()

우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단1로6(범천1동861-1)

/ <http://www.subway.busan.kr/>

전화 640-7127

모사전송 051-640-7134

/ jjuya0926@subway.busan.kr / 공개

을 제15-8호증

21세기·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부 산 광 역 시

Dynamic
BUSAN

수신자 부산교통공사 사장(기획조정팀)
(경유)

선 랑 사 장	7/	공	기획조정팀
접수일시 2008. 9. 16	번호 7577(91)	람	기획조정팀장
제 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처리팀 교통팀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1. 기획-002189 (2008. 9.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한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승인함을 통보합니다.

불 임 : 부산교통공사 정관 대비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을 제 15-8호증

담당자 권대우 도시철도담당 이도준 교통정책과장 09/11 이종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172 (2008.09.11.) 접수 ()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전화 888-8282

전송 888-3359

/ dwkwon@busan.go.kr

/ 공개

을 제15-8호증

15-9

안전 · 편리 · 품격의 선진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Humetro

수신자 부산광역시장(철도시설과장)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등 인가(승인) 요청

우리 공사의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등 4건의 규정안을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승인) 요청합니다.

- 붙임 1. 제6회 이사회 의결서 1부.
2.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3.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5.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을 제 15-9호증

부산교통공사



과장 주우태 기획부장 이동렬 ★기획조정실장 전결 10/26
김두봉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6132 (2015. 10. 26.) 접수

우 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 / http://www.humetro.busan.kr/
전화 8-7129 /전송 / wtjoo6866@humetro.busan.kr / 공개

을 제15-9호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 입니다.



부산광역시

명목한
내안안국을 여는
정부 3.0

수 신 부산교통공사사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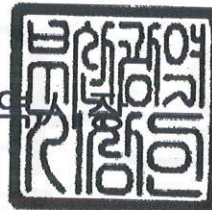
제 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등 인가(승인) 알림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6132(2015.10.26.)호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등에 대한 인가(승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1.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원안인가
2.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승인
3.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승인
4.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승인. 끝.

부산광역시



주무관 조귀연 도시철도팀장 정태교 철도시설과장 전결 10/30
협조자 이석근

시행 철도시설과-8829 (2015.10.30.) 접수 기획조정실-6254 (2015.10.30.)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
전화 051-888-4072 /전송 051-888-4089 / fuko1018@korea.kr / 공개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을 제15-9호증

16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2014.7.22. 구성)

성명	생년월	주요경력	추천기관
김인환	1947.10 (66세)	- 前 부산환경공단 비상임이사 - 前 부산교통공사 경영이사 - 前 부산진구·사하구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시장
이상철	1957.6 (56세)	-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안전행정부)	
이성두	1952.1 (62세)	- 前 영남 화훼조합장 - 前 강서로타리클럽 회장 -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의회
이철상	1953.10 (60세)	- 민주평통 해운대구협의회 고문 - 새누리당 중앙위 자문위원 - 前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영수	1957.3 (57세)	- 前 해운대구의회 의장 - 前 해운대구 새마을 지회장 - 前 제5,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준구	1954.10 (59세)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前 부산환경공단 비상임이사 - 前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공사 이사회
황영우	1960.12 (53세)	- 부산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준
16
서명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정 2005. 9. 21 조례 제4024호
개정 2009. 7. 8 조례 제4400호
개정 2010. 2. 17 조례 제4476호
개정 2013. 7. 10 조례 제4900호
개정 2015. 5. 27. 조례 제5151호
개정 2015. 11. 4. 조례 제52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를 설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7.8>

1. “부산교통권역”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7.8, 2013.7.10>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업
8.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
9.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4조(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2천억원으로 하되,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7.8>

② 삭제<2010.2.17>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8>

④ 삭제<2010.2.17>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2.17>

⑥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 삭제<2010.2.17>

제8조(이사회에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임)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로 본다.<개정 2009.7.8>

②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7.8>

③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입) ①공사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7.8, 2015.5.27>

②공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7.8>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7.8>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13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삭제<2015.11.4>

②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7.8>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7.8>

제16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공기업법」 제74조에 따른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7.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개정 2009.7.8>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별표의 사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5.27]

부칙 <제4024호, 200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칙 제2조·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자본금 출자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포괄승계한 것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부칙 <제4400호, 2009.7.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6호, 20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0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1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5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탁사무(제17조 관련)

사무명	근거법령
1.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철도안전법」 제41조
2. 위해물품의 휴대에 관한 허가	「철도안전법」 제42조
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행위의 금지·명령 및 조치명령	「철도안전법」 제45조
4.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금지·명령·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철도안전법」 제46조
5.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확인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제49조제1항, 제73조제1항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결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공사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정관 작성 및 인가 요청
3. 공사 설립동기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제규정 및 내규 작성
5. 기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인계) ① 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립등기 후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등을 지체없이 공사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한 때에는 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세부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하며, 위원회가 해산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결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공사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정관 작성 및 인가 요청
3. 공사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제규정 및 내규 작성
5. 기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인계) ① 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립등기 후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등을 지체없이 공사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한 때에는 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세부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하며, 위원회가 해산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